

##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



보건복지부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(2024.10.31.)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: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별표4 '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'

### 1) 2025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.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(2024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.3명당 1명 이상에서 변경됨)

(단위 : 원)

등급	2024년 수가	2024년 본인부담금	2025년 수가	2025년 본인부담금
1등급	84,240	16,850	90,450	18,090
2등급	78,150	15,630	83,910	16,780
3,4,5등급	73,800	14,760	79,240	15,850

### 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

(단위 : 원)

급여비용 안내 (*30일 기준*)									
분류	인력배치기준	장기요양급여비용				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(간식비포함)	본인부담금 (비급여항목 포함)		
		총급여액	본인부담금				일반 (20%)	감경 (12%)	감경 (8%)
		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			
1등급	2.3:1								
	2.1:1	2,713,500	542,700	325,620	217,080	366,000	908,700	691,620	583,080
2등급	2.3:1								
	2.1:1	2,517,300	503,460	302,080	201,380	366,000	869,460	668,080	567,380
3,4,5 등급	2.3:1								
	2.1:1	2,377,200	475,440	285,260	190,180	366,000	841,440	651,260	556,180

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(6.69%)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.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 2025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

2024년 12월 일

정원재활요양원장 (관인생략)